

『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사회재난 발생 시,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내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장례비, 치료비 지원 기준을 추가(안 제4조)
-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(안 제5조, 제6조)
- 그 밖의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4항, 제6항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의 개정 에 따라 관련된 우리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신설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<조례 개정 표준안>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